



## 特許發明의 研究를 위한 利用

特許法은 發明의 保護와 利用을 圖謀함으로서 產業發展에 寄與하고 나아가서는 公益을 增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特許權의 效力を 그대로 認定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制限을 加하는 것이 產業發展上・公益增進上 必要한 경우가 있습니다.

現行 特許法上,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範圍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습니다.

1. 研究 또는 試驗을 하기 為하여 他人의 特許發明을 實施하는 경우

2. 國內를 通過하는데 불과한 運輸用 機械器具 또는 그 裝置

3. 特許出願 當時부터 國내에 있었던 物件

따라서 他人의 特許權이나 實用新案權의 使用이 단순한 研究目的에 利用되는 경우에는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으므로 아무런 節次도 밟지 않고 利用할 수 있습니다.

## 特許權의 出資方法과 比率

一般的으로 特許權者와 同業하는 경우에는 特許權者가 技術을 提供하고 資本家가 資本과 經營을 맡는 것이 보통의 例입니다.

工業所有權도 하나의 財產權이므로 會社設立時 現物 出資의 대상이 됩니다.

出資의 比率은 모든 特許權을一律의 으로 定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當事者가 協議한 評價額에 따라 出資額이 定해질 것입니다.

特許權의 評價에 있어 參考할 事項을 말씀드리면

- ① 發明의 重要性(基本的 發明인지 改良發明인지)
- ② 發明의 開發程度(다시 研究를 요하는 技術인지)
- ③ 發明實施의 所要經費
- ④ 需 要
- ⑤ 實施함으로 얻을 수 있는 利益金
- ⑥ 노우하우를 同伴하는지의 與否等

## 實施權의 設定登錄 節次

特許權이란 特許받은 發明(物件,

裝置・方法)을 特許權者가 獨占排他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하므로 特許權者는 自己의 權利를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음은 물론 그 實施權을 他人에 許與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特許權이나 이의 實施權은 物體가 無形의 것인므로 權利에 對한 公시는 權利關係에 關한 公부인 特許登錄原簿에 依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또한 專用 實施權의 設定・變更・消滅等에 關한 事項은 登錄을 하지 않으면 效力이 發生하지 않으나, 通常 實施權의 設定은 登錄을 하지 않아도 效力은 發生되나 登錄이 되지 아니하면 第3者에 對抗하지 못합니다.

即 專用 實施權에 關한 登錄은 效力發生 要件이고 通常 實施權에 關한 登錄은 對抗要件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專用 實施權이든 通常 實施權이든 간에 登錄은 必要하게 되는 것입니다.

特許權에 對한 實施權의 設定을 登錄코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特許權의 實施範圍 即 實施地域・實施期間・實施權利用內容 등을 決定하는 實施許與契約을 締結한 다음 登錄申請書를 作成하고 實施權設定契約書, 印鑑證明書, 外國人인 경우에는 國籍證明書, 第3者의 同意가 必要한 경우에는 그 證明書類 等을添附하여 特許廳 登錄課에 申請하면 됩니다.

登錄課에서는 申請書類 内容의 諸般 記載事項을 確認한 後에 하자가 없을時 特許登錄原簿에 登錄을 畢하고 申請書 副本에 登錄이 되었음을 記載하여 申請人에게 通知합니다. <계속>

신간안내	辨理士 第2次 試驗(주관식) 對備 論點 工業所有權法 저자: 金炳鎮 변리사 외 9인 규격: 국판 420면 가격: 8,000원
------	---